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24. 4. 16 선고 2022가단848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 유병연, 김정원, 박환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류한호, 문찬두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촌

담당변호사 손병희

변 론 종 결 2024. 2. 13.

판 결 선 고 2024. 4. 16.

주 문

1.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제6항 내지 제9항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2. 3. 2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4,561,5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4,561,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C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2022. 3. 25.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나. 피고는 C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3항 및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제6항 내지 제9항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2. 3. 25.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27,250,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7,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

- 1) C은 2004. 10. 11. 주식회사 D과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였다.
- 2) 주식회사 D는 2014. 9. 25.경 원고에게 C에 대한 신용카드이용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C에게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 3)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2015차전56712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5. 11. 26. 위 법원으로부터 “C은 원고에게 103,767,344원 및 그 중 36,693,133원에 대하여 2015. 11.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4) 이 사건 채권은 2022. 10. 4. 기준 원리금 합계 179,461,963원 및 그 중 원금 36,693,133원에 대하여 2022. 10.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9.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다.

나.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 1) E는 2022. 3. 25. 사망하였고(이하, E를 ‘망인’이라 한다), F, C, 피고, G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공동상속인이다.

2) 망인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할 때는 순번으로 지칭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22년 6월경 F, C, 피고, G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3) 피고는 2022. 6. 1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분할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C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상속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 외에는 다른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5호증의 2 내지 9,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성립된 것으로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었던 C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4분의 1 지분을 포기하고

이를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의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한 것은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 감소를 초래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및 범위

1)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부동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그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239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C에게 별지 목록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부동산 중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별지 목록 제6항 내지 제9항 기재 부동산

가) 관련 법리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 상당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채권액을 초과하여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때 채권자의 채권액에는 사해행위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발생한 이자나 지연손해금이 포함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63912 판결 참조).

또한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대항력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임대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또는 같은 법 제8조에 의하여 임대차보증금 중 일정액을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이 있는 때에는 수익자가 배상하여야 할 부동산의 가액에서 그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이 법원의 상주시 H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제6항, 제7항, 제8항, 제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3. 6. 28. 채무자는 망인, 근저당권자 I조합, 채권최고액 56,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다가 이 사건 분할협의일 이후인 2022. 7. 13.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된 사실, 2012. 12. 12. 채무자는 망인, 근저당권자 J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사실, 임차인 K가 2014. 4. 10. 이 사건 제9항 기재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에 임차하여 2015. 10. 28.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및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위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었던 사실¹⁾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분할협이는 상속이 개시된 2022. 3. 25. 소급하여 효력이 있으므로 별지 목록 제6항 내지 제9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은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위 제6항 내지 제9항 기재 부동산의 가액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및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공동담보가액 중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과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의 반환을 명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L, I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2. 7. 1.자 기준으로 이 사건 제6항 내지 제9항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이
합계 200,000,000원2) 이고,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근저당권자
I조합의 경우 56,000,000원, 근저당권자 J의 경우 35,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제 6 내지 제9항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

98,246,000원(=204,246,000원 - 56,000,000원 - 35,000,000원 - 15,000,000원) 중 C의
상속지분 4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24,561,500원이고, 이는 피보전권리인 이 사건 채권보다 적은
금액이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제6항 내지 제9항 기재 각 부동산 중 C의 상속지분인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위 24,561,5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24,561,5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배예선

별지

- 1)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위 임대차계약이 갱신되어 존속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원고는 이를 명백히 다투지않고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위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았음을 증명하지못하는 이상 위 임대차보증금은 공제되어야 한다.
- 2) M조합의 2022. 11. 9.자 금융거래정보회신에 의하면, 이 사건 제6항 내지 제9항 부동산의 가액
합계는 200,000,000원이라는것이고, 2023. 3. 13.자 금융거래정보회신에 의하면,
204,246,000원이라는 것인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2023. 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참조) 200,000,000원을 위 각 부동산 가액의 합계로 산정한다.